

참고 1

<『희망저축계좌 I』 자가진단표(가입희망자 작성용) >

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,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.
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『희망저축계좌 I』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작성일	년	월	일	작성자 성명	(서명)
-----	---	---	---	--------	------

구 분	점 검 내 용	선택체크														
필 수 가입요건	1. 귀하는 생계·의료 수급 가구입니까?	예, 아니오														
	2.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 입니까?	예, 아니오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구구분</th> <th>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%(원/월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인 가구</td> <td>777,925</td> </tr> <tr> <td>2인 가구</td> <td>1,304,034</td> </tr> <tr> <td>3인 가구</td> <td>1,677,880</td> </tr> <tr> <td>4인 가구</td> <td>2,048,432</td> </tr> <tr> <td>5인 가구</td> <td>2,409,806</td> </tr> <tr> <td>6인 가구</td> <td>2,762,80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가구구분	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%(원/월)	1인 가구	777,925	2인 가구	1,304,034	3인 가구	1,677,880	4인 가구	2,048,432	5인 가구	2,409,806	6인 가구	2,762,802
	가구구분		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%(원/월)													
	1인 가구		777,925													
	2인 가구		1,304,034													
	3인 가구	1,677,880														
4인 가구	2,048,432															
5인 가구	2,409,806															
6인 가구	2,762,802															
※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‘근로·사업소득’으로 판단합니다. 근로·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, 노인일자리/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.(단,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)																
3.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**** 을 하고 있습니까?	예, 아니오															
*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(노인·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)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(단,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) ** ‘재직증명서’, ‘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’등을 통해 확인 *** (제외업종) 사치성·향락업체, 도박·사행업 업종 종사자																
4.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 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	예, 아니오															
※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(통장개설자)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‘예’로 선택																
5. 귀하는 가입기간 중 생계·의료수급에 벗어난 경우만 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. 참여가 가능합니까?	예, 아니오															
6. 유사 자산형성사업 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?	예, 아니오															

[담당 공무원 확인용]

확인일		확인자 성명	(서명)	점검결과	☐ 적합 ☐ 부적합
-----	--	-----------	------	------	--

가입연도	2022		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희망저축계좌 I / 희망저축계좌 II / 청년내일저축계좌		※ 처리기간 - 희망저축 I 20일 - 희망저축 II/ 청년내일저축 70일		
가입기수							
가입은행							
구분	☐ 희망저축계좌 I (생계·의료 수급자) ☐ 희망저축계좌 II (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) ☐ 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) ☐ 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)		☐ 자활사업 참여 시 사업단 유형 ○ 시장진입형 ○ 시간제일자리 ○ 청년자립도전사업단 ○ 사회서비스형 ○ 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) ○ 인턴·도우미형				
	신청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휴대전화	
		주소				전화번호	
		비상연락처	관계		성명		연락처
직업					근무지명		
근무형태		☐ 상용직(정규직) ☐ 임시직(계약직, 기간제) ☐ 일용직 ☐ 아르바이트(시간제근로자) ☐ 자영업자					
※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 (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)							
가입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신청인과의 관계		
						전화번호 휴대전화	
적립 및 가구 정보	1. 월별 저축액 (약정금액)		최소 100,000 원 (*100,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생) ※ 저축기간 ☐ 최대 36개월 ☐ 최대 60개월(군입대한 경우)				
	2. 저축액 사용계획						
	- 저축목적		☐ 주택구입·임대 ☐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 ☐ 창업·운영자금 ☐ 의료비 ☐ 개인자산형성(ISA·일반적금) ☐ 국민연금·고용보험·건강보험 본인부담금 ☐ 가구원 돌봄비용 ☐ 결혼자금 ☐ 그 밖에 자립·자활				
	- 향후 자립·자활계획		(자유롭게 기술)				
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			미참여/참여(사업명 : , 기간 : , 수령액 :)				
희망·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			최초/재가입(사업명 : , 참여기수 : , 적립횟수 :)				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※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			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
1.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. 2.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 3.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,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.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							

저축 동의서

□ 동의

- 나는 희망저축 I·희망저축 II·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.
-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.
-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□ 조건

1. 공통

-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.
-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.
-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2. 사업별

※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희망저축계좌 I (생계·의료수급자통장)

□ 동의

- 지원금 적립기준	당월 본인적금 적립 +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
- 중도해지사유	3년 만기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 못한 경우, 일부지급해지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,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 미달,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압류·가압류,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
- 지급요건	3년 이내 <u>탈수급</u> (의료급여까지 벗어나는 경우)

저축 동의서

※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희망저축계좌Ⅱ(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) ☐ 동의

- 지원금 적립기준	당월 본인적금 적립
- 중도해지사유	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,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, 압류·가압류,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, 생계·의료 수급가 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, 용도증빙 못한 경우
- 지급요건	3년 간 통장 유지 + <u>교육(총 10시간)</u> 이수 + <u>사례관리 상담(총6회)</u> 이수 + <u>지원금의 50% 이상 용도증빙</u>

※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청년내일저축계좌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) ☐ 동의

- 지원금 적립기준	당월 본인적금 적립
- 중도해지사유	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,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, 압류·가압류,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, 본인 사망시
- 지급요건	3년 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<u>교육(총10시간)+ 자금사용계획서</u>

□ 계약

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Ⅰ·희망저축계좌Ⅱ·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·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**동 의 합 니 다.**

년 월 일

희망저축계좌Ⅰ·희망저축계좌Ⅱ·청년내일저축계좌 **신청자 (성명)** (서명/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[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]

본 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계좌 I·II, 청년내일저축계좌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목적	구분	항목	보유기간
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	필수	이름, 연락처, 직업, 주소, 근무지, 이메일, 가족사항, 세대 구성, 결혼여부, 소득	<u>사업참여 종료 후 10년</u>
	선택	국적, 집 전화번호	

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☒ 예 ☐ 아니요
(선택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☒ 예 ☐ 아니요

■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목적	항목	보유기간
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	<u>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u>	<u>사업 종료 후 10년</u>

※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☒ 예 ☐ 아니요

■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목적	항목	보유기간
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, 사례관리, 연구 등	<u>건강, 병력, 장애여부</u>	<u>사업참여 종료 후 10년</u>

※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☒ 예 ☐ 아니요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

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항목	보유기간
보건복지부, 한국자활복지개발원, 사회보장정보원,	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제공	인적정보 : 이름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국적, 전화번호, 주소, 주거지	<u>서비스 종료 후</u>

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					
수급(권)자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			
취업상태	유형	☐ 상시근로자 ☐ 임시·일용직(파출부, 일일잡부 등) ☐ 자영업(노점·행상, 농어업 등) ☐ 기타			
	직장(사업장)명				
	직장(사업장)주소	(전화:)			
소득	일당제	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: 일			
	근로시간	일시간 오전 : ~ : (시간) 일시간 오후 : ~ : (시간) 주당 근로일수 : 일 주 근로시간 : 총 시간			
		월급제	월 평균 총급여 : 원		
		자영업	월 평균 총소득 : 원		
	기타	월 평균 총소득 : 원 (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:)			
		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		
신고자: (인)	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※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(벌칙)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, 1,000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.					

고 용 · 임 금 확 인 서						
피 고 용 자	성 명		생년월일			
	주 소					
	고 용 성 격 (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)					
고 용 기 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
근 로 시 간		일시간 오전 : ~ : (시간) 일시간 오후 : ~ : (시간) 주 당 근로일수 : 일 주 근로시간 : 총 시간				
임 금 지 급 형 태		일당제	1 일 임 금 : 원			
			월평균 고용일수 : 일			
		월급제		월분	월분	월분
			기 본 급			
			각 종 수 당			
			기 타 금 액 (여비, 자동차유지비 등)			
	합 계 금 액					
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		☐ 가 입 ☐ 미 가 입				
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사 업 장 명 : 사 업 장 주 소 : 사업자등록번호 : 전화번호 : (영업허가번호) 사 업 주 명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	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000만원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						

자산형성지원사업 이행계획서(예시)

- 희망저축계좌 I -

대 상 자	성 명	■	생년월일	■
	주 소	■		
	연락처	■	휴대폰	■
	사업명	■		
	가입기수	■ 년 ■ 기(■ 월)	만기일자	■ 년 ■ 월 ■ 일

※ 저축액 사용 용도

- ✓ 주택구입·임대 ✓ 본인, 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
 ✓ 사업 창업·운영자금 ✓ 자활·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(ex.의료비) 등

※ 구체적 지출내용(서술식)

ex) 자녀 김희망의 대학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(사용처) 300만원(사용금액)을 '21. 2월 중 (사용예정일) 지출하고자 합니다.

- 본인은 위 용도로 지출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장려금 등 입금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*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*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)

작성일 : 년 월 일

작성자 성 명 : 서명 또는 (인)

용인지역자활센터장 귀하